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4. 6. 28.(금)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

불참위원 : 없음

---

##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0시 0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김홍일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표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두 분 중 두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박동표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김홍일 위원장
  - 2024년도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 회의록 확인

- 김홍일 위원장
  - 지난 회의록을 확인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8차, 제29차, 제30차, 제31차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김홍일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결안건 라>는 인사관리  
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10시 02분 】

## 6. 의결사항

### 라.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2024-32-301) (비공개)

【 10시 11분 】

- 김홍일 위원장  
- 다음 안건은 공개 안건입니다.

### 가.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 (2024-32-298)

- 김홍일 위원장  
- <의결안건 가>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의안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한국방송  
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 선출 등과 관련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 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임기 만료가 도래하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 임기가  
'24년 8월 12일에 종료되는데 그 선임 절차에 대략 최소한 4~5주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오늘 선임 계획(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좌미에 행정법무담당관

- 안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 임원 선임계획을 별지와 같이 정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40조제3항에 의거하여 KBS 이사를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방문진 이사·감사 임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EBS 이사 임명을 위한 선임계획(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계획(안)입니다. <1> 선임대상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KBS·방문진·EBS 이사 선임 방안입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KBS 이사 관련입니다.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방송법 제46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진 이사 관련입니다.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BS 이사 관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1명과 대통령이 정하는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도록 동법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원칙입니다. ‘방송의 전문성’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성 및 성별, 직능별 대표성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참여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자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임 방안입니다. 모집 방법입니다. 우선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 모집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모방법은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기간은 14일이며, KBS·방문진 이사는 6월 28일부터 7월 11일 목요일 18시까지이고, EBS 이사는 7월 12일 금요일에서부터 7월 25일 목요일 18시까지입니다. 제출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은 방문접수와 등기 우편으로 가능한데 마감일까지 도착하는 분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 확보를 위하여 자천 및 타천 방식으로 접수를 하게 되고, KBS·방문진·EBS 이사에 중복 응모는 불가합니다. 원활한 심사업무 등을 하기 위하여 타천의 경우 피추천인, 즉 지원자와 협의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일인에 대하여 다수의 추천인이 지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접수된 건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원자의 정보 공개와 국민의견 수렴 관련입니다. 국민의견 수렴용 지원서를 인터넷, 즉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원서에는 경력사항, 지원동기, 임명 시 업무수행 계획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지원자에 대해 제출된 국민의견을 취합하여 후보자 선정과정에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후보자 선정입니다. 이사회 구성은 각 분야의 대표성 및 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고려하고 지역성, 성별·직능별, 즉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대표성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방송법 제48조,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에 있는 결격사유 등도 확인하게 됩니다. 결격사유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5페이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후보자 선정 과정에는 국민의견수렴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심사절차는 서류전형이 마무리된 이후 필요할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KBS 이사 추천과 방문진·EBS 이사 임명이 진행됩니다. 세 번째, 방문진 감사 선임 방안입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방문진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안은 공모 절차 없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KBS·방문진·EBS 간 이사 응모에 중복금지로 계획을 잡은 것이지요?

○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2009년부터 지난 2021년까지 5차례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렇지요?

○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 예, 맞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그 당시 중복응모 금지가 2018년도부터 시행된 것이 맞습니까?

○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 예, 맞습니다. 2011년에도 중복응모가 불가했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EBS는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 '21년 말씀이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2015년까지는 KBS와 방문진은 중복응모를 금지했고, EBS는 가능했는데 2018년, 2021년 두 번에 걸쳐 EBS까지 포함해서 중복응모를 금지했던 것이지요?

○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 예, '15년까지는 부분적으로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정보공개 국민의견수렴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정보의 공개 및 국민의견수렴 절차는 2018년에 처음 이 절차가 도입이 됐고, 두 번에 걸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 예, 맞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처음 절차 시행이 논의될 당시, 즉 2018년도 당시 이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 도입 목적과 거기에 대한 부작용 우려 등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 그리고 객관성, 공정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대외에 공개하지 않지만 상임위원들이 후보자를 선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 예, 맞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그렇지만 그때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검증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제도적으로 위험하다. 즉, 집단 여론몰이, 신상털이, 인신공격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실제 2가지를 묻고 싶은데 그때 이러한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 즉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견을 낼 때 실명제로 한다. 그리고 수렴된 의견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위원회 회의 때 상임위원들에게만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이것이 맞습니까?

○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 예, 맞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실제 이런 인신공격성 의견이나 명예훼손적인 그런 의견을 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 그 당시의 내용을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내용들이 다양한 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명에게 집중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었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의견이 제시 안 된 경우도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안내할 때 안내문에 인신공격성 의견이나 명예훼손적인 의견을 달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문구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문구가 안내문에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까?

○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 실제 공지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제도의 도입 취지, 또 긍정적인 측면에 비추어서 저도 결론적으로는 두 번에 걸쳐 실시했던 후보자 정보공개 및 국민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특정 정파, 성향, 이념의 입장에서 응모자를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의견, 그리고 일부 편향된 단체에서 기피인물을 선정해서 아예 사실상 집단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의견들은 이 절차의 긍정적인 측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는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더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지난 2018년도까지는 실제 후보자에 대한 직접 면접은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 예, 맞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필요 시 면접'이라고, 필요할 때 나중에 상임위원들 간 상의해서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2009년도 처음부터 계속 있었지만 실제 면접이 실시된 것은 2021년도였지요?

○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 예, 맞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주로 화상 면접으로 했습니까,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서 면접을 실시했습니까?

○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 자료를 확인해 봤을 때 직접 면접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공영방송 이사에 응모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나름대로 사회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고 또 방송분야에 전문성을 띤 분들이 응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나중에 상임위원 간 논의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면접을 직접 또는 화상면접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적으로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 예, 필요한 경우에 면접실시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특별히 물으실 것 있으십니까?

○ 김홍일 위원장

- 없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회의 모두에 위원장께서 3개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 안건을 오늘 상정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021년도 공영방송 임원 선임에 관한 2021년 7월 7일자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을 보았습니다. 당시의 여당, 또 당시 대통령께서 임명했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한 발언이 있습니다. 지난 정권의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상임위원께서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하셨습니다.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과 관련된 법안들이 계류 중인데 사실상 진전이 없습니다. 당장 KBS 이사 등 공영방송 임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 위원회가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마저 구성하지 못 하게 되면 우리 방송시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방통위가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이사들이 특정 정파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공정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널리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당시 방통위원회 위원장께서도 또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각종 법률안 형태로 제출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결국 공영방송의 독립성·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를 기초로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지연되는 상황이 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임기 만료 시점이 KBS·방문진·EBS 모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공모안을 마련한 것이다”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4~5주 이상 소요되는 이런 중요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관한 건을 오늘 처음 그 계획을 의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미루는 것은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책무를 도리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방송의 독립성·공공성·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방송사의 최고의결기구임



니다. 공영방송 3사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또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선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영방송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구성되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책임은 어느 때보다도 더 중하다고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이고 적합한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을 갖춘 우리 사회의 많은 훌륭한 분들이 이번 공모에 지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절차가 차질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저도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임원 선임계획 안건은 2018년, 2021년과 거의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임원을 추천·선임하는 내용입니다. 훌륭한 분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사무처는 정성껏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결원 중인 세 분의 상임위원을 국회에서 조속히 추천해 주셔서 함께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 절차를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 허가조건 및 「전파법」 위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24-32-299)**

○ 김홍일 위원장

- <의결안건 나> “허가조건 및 「전파법」 위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 태백에프엠공동체라디오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의결안건 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 의결주문입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허가조건을 위반한 태백에프엠공동체라디오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태백FM’)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정을 명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정명령(안)은 “태백에프엠공동체라디오 사회적협동조합은 방송중단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방송사업 운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9월 말까지 제출하고, 2022년 신규 허가 시 부과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그리고 의결주문 두 번째는 “태백FM이 무선국을 1개월 이상 운용하지 않았음에도 휴지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통해 과태료 20만 원과 또한 1개월 이상 운용을 휴지한 무선국을 재운용하면서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30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9조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허가 시 부과한 조건을 위반한 태백FM에 대해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과 「전파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방송국을 운영한 태백FM에 대한 「전파법」 제92조에 따른 행정처분(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FM은 '23년 7월 20일 개국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로, '24년 4월 1일에 태백FM 방송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 5월 8일 다시 태백FM 방송을 재개하였고, 방통위에서는 5월 24일과 6월 11일 두 번에 걸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위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중단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입니다. 태백FM은 말씀드렸듯이 4월 1일부터 5월7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여 신규허가 시 부과했던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항 하나와 무선국 운용 휴지 및 재운용 신고 미이행에 따른 「전파법」 위반이 있습니다. 「전파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르면 무선국 운용을 1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또는 1개월 이상 운용을 휴지한 무선국을 재운용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태백FM은 휴지신고를 하지 않았고, 재운용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아 「전파법」을 2차례 위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심인 쪽에서는 전 이사장과 현 이사장의 이사장 변경과정에서 의견 충돌로 인해 연주소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방송중단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방송중단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시정 명령을 내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반행위자가 자발적으로 방송을 재개한 상태이나, 방송사업 운영에 있어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중단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방송사업 운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조건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과태료입니다. 전파법 규정에 따른 무선국 휴지와 재운용 신고를 행하지 않은 2건의 위반행위 각각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자가 행정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신생 방송국인 점과 위반행위로 인한 민원제기가 현저하게 청취자 피해로 이어진 부분이 특별하게 파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1/2을 감경한 1차 위반에 대해서 20만 원, 2차 위반에 대해서 30만 원으로 감경하여 총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동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면 7월에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관련 사전 통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지금도 사전통지하기 전에 전체회의에 올립니까?

○ 김영주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오늘 의결안건으로 올린 것입니다. 오늘 과태료 처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린 것입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이런 공동체라디오는 영세하지요?

○ 김영주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이상인 부위원장

- 이런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종전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사례가 있습니까?

○ 김영주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대표자 변경신고 의무위반과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신고 의무위반으로 2개 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았던 사례가 있고, 또 허가범위를 벗어난 방송국을 운영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게 과징금 750만 원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방송중단의 가장 큰 원인은 전·현직 대표 간의 의견충돌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요?

○ 김영주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맞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휴지 신고, 재운용 신고하는 법령이나 조건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 김영주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같은 경우 방송법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방송사업자에 비해 좀 더 낮은 부분도 있지만, 허가조건 위반사항임을 안내하면서 저희가 방송국이 위치했던 방송사에도 직접 방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통지하면서 계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중단기간에 저희 방통위 사무처에서는 어떤 역할과 조치를 했습니까?

○ 김영주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중단인 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파악된 부분이고, 방송국이 위치한 쪽이 태백시였기 때문에 태백시에 현장방문해서 점검했고, 그다음에 상황에 대한 관계자 면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재개에 대해서도 수시로 전화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유도한 바 있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에프엠공동체라디오에 대하여 방송중단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방송사업 운영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허가조건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태료의 경우 소규모 방송국인 점, 그리고 민원 제기 등 현저한 청취자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사무처 원안과 같이 감경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저도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가결되었습니다.

**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24-32-300)**

○ 김홍일 위원장

- <의결안건 다>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소현 편성평가정책과장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방송의 제작비용 부담 완화 및 자체제작 촉진을 위하여 지역MBC와 지역민방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3> 추진경과입니다. 2024년 3월 27일 국무조정실에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해당 방안 내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완화가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사전검토를 거쳐, 5월 22일 위원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6월 7일간 관계부처 의견조회, 5월 27일~6월 16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고, 행정예고 결과 의견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역MBC는 매 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20%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하고, 지역민방은 매 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2% 이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나> 개정내용입니다. 지역MBC에 적용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4% 이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제3호 관련 부칙 개정사항입니다. 지역민방에 적용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기존 ‘3.2% 이상’에서 ‘2.6% 이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제6호 관련 부칙 개정사항입니다. <5> 행정예고 결과 및 검토의견입니다. <가> 규제 완화 대상 확대 의견입니다. 한국방송협회, SBS, TV조선, 채널A, JTBC는 미디어 환경 변화, 외주제작시장 성장 등을 고려하여 지역방송사뿐만 아니라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적용받는 방송사업자 전체에 대해 규제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원안 유지입니다.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마련에 따라 지역MBC와 지역민방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를 우선 추진하되, 추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하여 방송편성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 규제 완화 반대 의견입니다. 한국독립PD협회는 외주제작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면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완화보다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원안 유지입니다. 지역방송사 경영 악화 등을 고려하여 순수외주제작 편성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되, 외주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문체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고시 일부개정(안)이 의결되면 7월 중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를 관보 게재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5월 위원회 보고 이후 행정예고안의 고시 시행 일정이 당초 7월 1일에서 조금 변경됨에 따라 행정예고안 일부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별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붙임> 행정예고안에 대한 접수의견 주요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전에 보고를 우리가 받았던 사안인데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인 부위원장

- 문체부 합의는 완료됐습니까?

○ 황소현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문체부 합의사항이라서 사전에 합의를 마치고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한국독립PD협회는 개정에 반대하고 제작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검토는 하셨습니까?

○ 황소현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한국독립PD협회의 취지는 순수외주제작 편성규제에 대한 원론적 반대라고 판단했고, 지역방송사가 경영상황이 어렵고, 또 전체 외주제작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해서 한시적 규제 완화는 원안대로 추진하되 중소제작사의 제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관부처인 문체부 등과 협력해서 이해관계자 의견도 청취하고 세부사항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 이상인 부위원장

- 이 안건은 지난 5월 22일 위원회 보고안건 때 자세히 논의됐던 안건입니다.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서 원안처럼 지역MBC와 지역민방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를 우선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홍일 위원장

- 저도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

의 없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이의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가결되었습니다.

## 7. 기 타

○ 김홍일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이상인 부위원장

- 없습니다.

○ 김홍일 위원장

- 그러면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8. 폐 회

○ 김홍일 위원장

- 이상으로 2024년도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48분 폐회 】